

보도시점 2025. 10. 3.(금) 조간 배포 2025. 10. 2.(목) 09:00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 -

-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약 33% 증가
-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 및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안내

<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

-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추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융감독원에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리금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
- ④ **[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한 계약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됨
-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대출계약시 해당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103조)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음
-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 활용

'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I.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고·상담 동향

'25.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시행 이전 2개월간 2,744건, +33.1%),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시행 이전 2개월간 545명, +22.6%)으로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시행 이전 2개월간 368명, +37.8%)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금감원 피해신고센터, ☎1332)을 적극 홍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신고·상담 추이 >

구 분	시행 이전 2개월 (5.22~7.2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7.22일)	시행 이후 2개월 (7.22~9.21일)	증가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2,744건	→	3,652건	+33.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545명		668명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368명		507명	+37.8%

II.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사금융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25.9.11일~).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추심·불법대부행위 및 SNS 불법게시물 차단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 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 ② SNS 계정 차단 신청: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 카카오톡·라인 어플(“신고하기” 기능으로 신청)에서도 신고 가능
-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채무자가 금전대부 과정에서 차용증(대부계약서)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이메일 jebo1332@fss.or.kr)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였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¹⁾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²⁾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5.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 ① 원리금 전액(40만원)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1,000만원)('25.6월)

② 원리금 상환(584만원) → 법정 최고금리 초과금액(2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5,000만원)('25.7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 등 피해자는 소송 지원사업은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신청방법]

- ① (전화) 금융감독원(☎1332 → 3번 → 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④ (방문) 금융감독원(본원 및 11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소)



[소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① 상대방 특정을 위한 정보(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와 사실관계 확정(피해내용·금액 등)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
- ② 중위소득 125% 이하('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가 필요

④ **[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대부 계약시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다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 (관계인 연락, 폭행·협박,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계약은 무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인 특약 사례]

- ① 채무불이행시 그 어떠한 민형사 책임을 질 것이며 상환날짜·시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 및 채무독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② 상환날짜까지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 채권추심에 동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③ 상환 당일 오전 11시까지 입금하고 이를 어길 시 1일 연장비 00만원을 입금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하여야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 명칭을 불문하고(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수령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 계산사례 및 유의사항]

대부계약 내용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
① 원금 : 30만원 ② 이자 : 6만원 ③ 상환기간 : 10일 ④ 대출수수료 : 별도 부과 가능	vs	①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을 제외한 25만원을 원금으로 교부 ② 10일 뒤 이자 6만원 외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만원을 추가한 총 40만원 상환 요구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 ① 원금 : 25만원(선이자 5만원을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 25만원이 원금)
- ② 이자 : 15만원(선이자 5만원 + 이자 6만원 + 대출수수료 4만원)
- ③ 1일 이자 : 1.5만원(이자 15만원 ÷ 상환기간 10일)
- ④ 1년 이자 : 547.5만원(1일 이자 1.5만원 × 365일)

⇒ 연 이자율 : 2,190%(1년 이자 547.5만원 ÷ 원금 25만원 × 100(%))

※ (올바르지 못한 이자율 계산방법) 선이자 5만원 및 상환기간 10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 6만원을 원금 30만원으로 나누기 → 연 이자율 20%의 정상 대부계약으로 착오

[주요 초고금리 소액대출의 연 이자율 예시]

- ① 3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476%
 - ② 4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6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2,607%
 - ③ 5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128%
- ☞ 모두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원금·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

III.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분들이 피해 차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밀착형·맞춤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등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2514)
			사무관	김상록	(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행정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윤동진	(02-3145-8272)
			팀 장	최승록	(02-3145-8129)

참고1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1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합니다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공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입니다.
-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계약으로 의심되나요?		법적효과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아니요	
2단계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아니요	
3단계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이자약정 무효
	▼ 아니요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 (대부계약서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계약취소 가능
	▼ 아니요	
5단계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2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합니다.
 - 지자체대부업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 대부중개업 미도입 →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천만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2027년 7월 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3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합니다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현재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등

4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합니다.
 -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중지
-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

법률상 근거(법 §8의2①)	사 례
1. 대부계약 과정에서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 2)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 요구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변경·연장 등)에서 1)채무자의 성적 영상물 등을 요구하거나, 2)인신매매, 장기기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선이자, 별도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최고 금리(연 20%)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3. 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에 채무 불이행시 관계인(가족·지인)에게 방문·연락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조건)에 채무 불이행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어떤 추심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4. 대부이자율이 초고금리 기준(연 60%)을 초과한 경우 *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약시 단리로 환산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1,738%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5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뒤 6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243%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대응요령 10계명

01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융·복지를 먼저 활용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복지(생계비 지원)-고용(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02 문자, 포털, SNS 등으로 유혹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 신속 편의성으로 유혹하거나, 정부지원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대출 광고에 유의하세요.

03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에서 거래상대방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대조하여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신고·상담 안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조회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등록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세요!

04 대출 상담시 SNS 계약체결, 개인정보 요구 등은 불법사금융으로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세요!

-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연체시 지인에게 유포하여 협박할 목적 이므로 절대 주지 마세요!

05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등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 폭행·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한다는 내용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거마비 등 명칭 불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06 대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설명·교부받고, 통화·문자,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대부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상대방의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여 추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07 피해가 발생했거나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상담하세요!**

- 금감원(☎1332→3), 경찰청(☎112) 등 신고·상담하시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소송지원 등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8 불법추심·불법대부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도 이용중지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 불법추심,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카카오톡, 라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불법사금융행위 제보신고”를 통해 신고
카카오톡·라인 계정은 어플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서도 차단 가능

09 개인정보, 신체사진 유포 등 **SNS 불법 게시물,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게시물을 신고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금감원 jebo1332@fss.or.kr로 신고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사금융행위제보”를 통해 신고
성착취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02-735-8994)로도 신고가능

10 불법추심 대응,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받는 등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소송, 손해배상 소송,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을 통해 신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